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

[시행 2024. 1. 1.] [조례 제1927호, 2023. 10. 18., 일부개정]

전라북도 남원시(주민복지과(복지행정)), 063-620-6821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제5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,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남원시 국가보 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0.12.31.)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보훈수당"(이하 "수당"이라 한다)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.<개정 2020.12.31.>
- 2. "보훈단체"란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조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.
- 3. "참전단체"란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.
- 4. "국가보훈대상자"란「국가보훈 기본법」제5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.<신설 2020.12.31.>
- **제3조(지원대상 및 지급액)** ①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<개정 2013.11.11, 2020.12.31, 2023.10.18.>
 -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5호, 제11호에 따른 사람 또는 유족 (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,선순위 유족 변경시 승계)<개정 2023.10.18.>

[전문개정 2019.4. 9.]

- 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4호, 제6호, 제7호, 제8호, 제9호, 제10호, 제12호, 제 13호에 해당하는 사람(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) <개정 2017.12.27,,2019. 4. 9., 2020.12.31.>
- 3. 삭제 <2019. 4. 9.>
- 4. 삭제 <2019. 4. 9.>
- 5. 삭제 <2019. 4. 9.>
- 6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(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)<신설 2023.10.18.>
- 7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(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)<신설 2023.10.18.>
- 8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(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)<신설 2023.10.18.>
- ②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지급에서 제외한다.
- 1. 삭제 <2017.12.27>
- 2. 삭제 <2017.12.27>
- 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3항,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39조제 1항,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제2항및제3항,「5・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

- 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2항및제3항,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<개정 2016.9.23,2017.12.27, 2023.10.18.>
-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하되, 지급액은 1인당 월 10만원으로 한다. 다만, 「전라북도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7조제5호에 따른 호국보훈수당지원에 따라 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다. <개정 2013.11.11. 2017.12.27., 2020.12.31.>, <후단신설 2019. 4. 9., 일부개정 2022.11.11.>, <단서 삭제 2020.12.31.> <단서 신설 2023.10.18.>
- ④ 제3항의 수당을 받는 국가보훈 대상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.<개정 2016.9.23, 2017.12.27, 2020.12.31.>, <단서 신설 2020.12.31.> <단서삭제 2023.10.18.>
- ⑤ 제3항의 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에게 생일축하금 5만원을 지급한다. 다만, 6·25참전유공자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.<단서 신설 2020.12.31.>
- 제4조(지급신청) ①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를 해당 읍·면·동장을 경유하여 남원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,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.<개정 2016.9.23,2016.12.9>
 -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유가족은 지급대상자 사망 후 3개월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를 해당 읍・면・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9.23,2016.12.9>
 -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, 신청인은 그 서류를 붙여야한다.<신설 2023.7.12.>
 - 1.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
 - 2. 입금계좌 확인정보(통장사본)
 -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입금계좌확인정보(통장사본)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, 신청인은 그 서류를 붙여야 한다.<신설 2023.7.12.>
- **제5조(지급방법 및 시기)** ① 수당은 매월 말일(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)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 한다.
 - ② 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.
- 제6조(지급대상자의 결정) 시장은 지급대상자의 수당지급 편의를 위해 국가보훈부의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적격여 부를 결정하고 수당지급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읍·면·동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당 지급사실을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.<개정 2023.10.18.>
- 제7조(지급중지 및 환수결정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.<개 정 2020.12.31.>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사망한 사람
- 2. 다른 시・군・구로 주소지를 옮긴 사람
- 3.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
-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- 1.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
- 2.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<개정 2016.9.23>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개정 2016.9.23>

부 칙 <2012.8.14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3.11.11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3조제3항의 개정 부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 <2016.3.25.>(남원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)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3조(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에 따라 별표 "조례 중 별지서식 개정대상"은 개정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.

부 칙 <2016.9. 23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6.12.9>

이 조례는 2017. 1. 1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7.12.27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생일축하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가 생일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3조제5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.

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0.12.31.>

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일부개정 2022.11.11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3조제3항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지급액부터 적용하되 그 차액을 지급한다.

부 **칙** <조례 제1897호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, 2023.7.12.> **제1조**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<생 략>

부 칙 <개정 2023.10.18.>

이 조례는 2024. 1. 1.부터 시행한다.